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주변의 공간, 환경까지 통합 관리가 요구되는 사무의 전문적인 분담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국장 밑에 보좌기관으로 역사유적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문화유산 정책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국가유산청장 소속 궁능유적본부 정원 1명(4급 1명)을 상호 재배치하며, 국가유산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및 필수보존요소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 및 영향진단 시 저감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역사유적정책관 신설에 따른 문화유산국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의 정원 3명(5급 2명, 연구사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가유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역사유적정책관 신설에 따라 조직 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유사 명칭의 조직과의 구분 등을 위해 문화유산국 역사유적과의 명칭을 역사유적정책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역사유적정책관으로 하며, 역사유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역사유적정책관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호, 제5의2호, 제7의2호,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역사유적과”를 “역사유적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사유적과장”을 “역사유적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2항 후단 중 “6명을”을 “5명을”로 한다.

제12장의2(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별표 3 중 총계 “342”를 “343”으로, 일반직 계 “341”을 “342”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4”를 “5”로,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6”을 “5”로,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2”를 “3”으로,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1”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7”을 “35”로, 시설주사 “6”을 “10”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1”을 “12”로, 운전서기보 “3”을 “2”로, 학예연구사 “22”를 “2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51”을 “352”로, 일반직 계 “350”을 “351”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4”를 “5”로,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6”을 “5”로,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2”를 “3”으로,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1”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3”을 “41”로, 시설주사 “6”을 “10”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을 “11”로, 운전서기보 “3”을 “2”로, 학예연구사 “22”를 “21”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을 각각 “10”으로 하고, “운전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96”을 각각 “195”로, 3급 또는 4급 이하 “193”을 “192”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6”을 각각 “75”로, 3급 또는 4급 이하 “75”를 “74”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5”를 각각 “21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204”를 “202”로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7명,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및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문화유산

연구원의 정원 1명(6급 1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의2]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0조의2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문화유산국 역사유적정책관	1명	2027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유산국) ① (생략)	제8조(문화유산국)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역사유적정책관으로 하며, 역사유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u><신설></u>	③ 역사유적정책관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호, 제5의2호, 제7의2호,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② 문화유산국에 문화유산정책과 · 근현대유산과 · 수리기술과 · <u>역사유적과</u> · 역사문화권과 · 유적발굴과 및 건축유산팀 · 민속유산팀 · 고도보존육성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	④ ----- ----- ----- <u>역사유적정책과</u> ----- ----- ----- ----- -----
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학	

예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
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
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
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⑥ 역사유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신 설>

2. ~ 17. (생 략)

⑦ ~ ⑪ (생 략)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⑪ (생 략)

⑫ 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
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6
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
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
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
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

-----.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⑧ 역사유적정책과장-----
-----.

1. (현행과 같음)

1의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운영에 관한 사항

2. ~ 17. (현행과 같음)

⑨ ~ ⑬ (현행 제7항부터 제11
항까지와 같음)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

----- 5
명~~을~~-----

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 ----- -----. <u>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u>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가유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342</u>	<u>343</u>	+1
	.		.	.	
	.		.	.	
일반직 계			<u>341</u>	<u>342</u>	+1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u>4</u>	<u>5</u>	+1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u>6</u>	<u>5</u>	-1
	.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u>2</u>	<u>3</u>	+1
	.		.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2</u>	<u>11</u>	-1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37</u>	<u>35</u>	-2
·	·	·	
·	·	·	
시설주사	<u>6</u>	<u>10</u>	+4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11</u>	<u>12</u>	+1
운전서기보	<u>3</u>	<u>2</u>	-1
·	·	·	
학예연구사	<u>22</u>	<u>21</u>	-1
·	·	·	
·	·	·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51</u>	• <u>352</u>	+1
일반직 계	• <u>350</u>	• <u>351</u>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 <u>4</u>	• <u>5</u>	+1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u>6</u>	• <u>5</u>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u>2</u>	• <u>3</u>	+1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 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u>12</u>	• <u>11</u>	-1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43</u>	<u>41</u>	-2
·	·	·	
·	·	·	
시설주사	<u>6</u>	<u>10</u>	+4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 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u>10</u>	<u>11</u>	+1
운전서기보	<u>3</u>	<u>2</u>	-1
·	·	·	
학예연구사	<u>22</u>	<u>21</u>	-1
·	·	·	
·	·	·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1</u>	• <u>10</u>	-1
일반직 계	<u>11</u>	<u>10</u>	-1
•	•	•	
•	•	•	
<u>운전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96</u>	• <u>195</u>	-1
일반직 계	<u>196</u>	<u>19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93</u>	<u>192</u>	-1
•	•	•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76</u>	<u>75</u>	-1
일반직 계	<u>76</u>	<u>7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5</u>	<u>74</u>	-1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

궁능유적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15	213	-2
일반직 계	215	213	-2
3급 또는 4급 이하	204	202	-2